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410
----------	------

발의연월일 : 2024. 7. 30.

발 의 자 : 서미화 · 김남희 · 정동영
박수현 · 주철현 · 박은정
강준현 · 이훈기 · 서영교
박희승 · 윤종균 · 김준형
백승아 · 이재관 · 이성윤
장종태 · 김재원 · 김 윤
염태영 · 정준호 · 위성락
안태준 · 조계원 · 오세희
김민석 · 정태호 · 채현일
박범계 · 권향엽 · 이재강
김현정 · 박지원 · 송재봉
박홍배 · 김예지 · 조 국
한창민 · 용혜인 · 전종덕
의원 39인

주 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하 UN 고문방지협약)」은 전 분야에 걸쳐 어느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선언하는

포괄적인 국제협약이며,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는 「UN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고문방지소위원회와 고문예방기구의 구금 시설 방문 권한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모든 종류의 구금 시설 내 고문 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정서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 1월 19일 「UN 고문방지협약」에 서명(발효일 1995년 2월 8일)하였지만 29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 세계 7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서명과 비준은 유보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조속히 비준하여 「UN 고문방지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기를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의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UN 고문방지협약」은 제1조에서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고문’을 정의하고 있음.

「UN 고문방지협약」은 우리 헌법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및 동법 제2항에 따른 고문 받지 않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국제협약임.

37개 조항으로 구성된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UN 고문방지협약」의 부속 문서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집단이 UN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해 권리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독립적인 국제 및 국내 기구에 의하여 수행되는 정기적 방문 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소위원회(Subcommittee for Prevention of Torture, 이하 고문방지소위원회)”의 설립과 “고문 및 그 밖의 잔

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방문 기구(National Prevention Mechanisms, 이하 **고문 예방기구**)”의 설립하거나, 지정·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함.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고문방지소위원회와 고문예방기구는 자신의 관할권 및 통제 하에 있는 장소로서 공권력에 의한 명령이나 그의 교사·동의 또는 묵인에 의하여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거나 박탈당할 수 있는 모든 장소(이하 구금 장소)를 이 의정서에 따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UN 고문방지협약」이 형식적인 선언이 아닌 가입국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UN 고문방지위원회는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구금장소에 대한 정기적 방문에 기반을 둔 예방적 성격의 비사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고문의 방지하기 위한 국제·국내 이행기구의 권한을 보장하여 국내적 조치를 보충하고 강화하고자 비준을 권고함.

나아가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자유 의 박탈’이라 함은 모든 형태의 구금이나 수감, 또는 사법·행정 또는 기타 당국의 명령에 의하여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떠날 수 없는 공공 또는 사설의 감호환경 하에 처하여지는 것을 의미하여,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권 폭을 넓히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 1월 19일에 「UN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한 이래 29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비준하지 않고 있음.

이는 개인이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았을 때에 국내적 절차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UN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UN 고문방지협약」을 형식적인 선언으로 만들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UN 고문방지협약」의 실효성 있는 실천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보호받는 동시에 천부적인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함.